

**부속서 II**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b>분 야</b>	커뮤니케이션
<b>관련의무</b>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b>유보내용</b>	<u>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u>

미합중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분 야** 사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분 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알래스카 원주민 분쟁 해결법에 따라 알래스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으로 약자인 소수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알래스카 원주민 분쟁 해결법, 43 U.S.C §1606(f) 및 (h)

**분 야**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운영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해상운송 서비스의 제공 및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국내 근해 무역, 연안 무역, 미합중국 영해, 대륙붕 위의 수역, 그리고 내륙수로에서 수행된 연안해상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연안해상운송 서비스에서의 시추선을 포함한 선박과 그 밖의 해상 구조물에 대한 투자, 소유 및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나. 대외무역에 있어 미합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및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다. 미합중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또는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

라. 선박의 미합중국 국적 등록을 위한 서류작업 관련 요건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소유자, 운항업자 및 선박에 대하여 가능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진흥 프로그램

바.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선원에 대한 인증, 면허 및 시민권 요건

사. 미합중국 국적 선박의 승선요건

아. 연방해사위원회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안<sup>1)</sup>

1)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합중국 대외통상 규제를 담당하는 미합중국 정부의 독립적 기구이다. 연방해사위원회는 1920년 상선법의 제19조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대외해상무역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다루기 위한 대응조치를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한 연방해사위원회는 외국정부의 법, 규칙, 규정 등 또는 외국 해상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이 미합중국의 해상무역에 있어 미합중국 운송인의 운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초래하며, 미합중국 법에 따라 또는 미합중국 해운 서비스 공급자의 결과로 그 국가의 외국운송인

- 자. 양자적 및 그 밖의 국제 해상 협정 및 양해의 협상과 이행
- 차. 선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안작업의 제한
- 카. 미합중국 수역으로의 진입에 대한 중량세와 등대세, 그리고
- 타. 미합중국 영해에서 도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에 대한  
인증, 면허 및 시민권 요건

다음 활동은 이 유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호의 대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분야에서 상응하는 시장 접근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선박 건조 및 수리, 그리고
- 나. 부두의 운영 및 유지를 포함하는 내항 항만활동, 내륙으로 또는 내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적 및 양하, 해상화물 취급, 부두의 운영 및 유지, 선박청소, 하역, 선박과 트럭·기차·파이프라인·부두간 화물의 운송, 부두 터미널 운영, 보트 청소, 운하 운영, 선박의 분해, 건설거를 위한 해상 철도의 운영, 화물을 제외한 해사 검정인, 고철획득을 위한 선박의 해상 해체, 그리고 선급협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3.2조(필수적 안보)를 조건으로 한다.

**기존의 조치** 1920년 상선법, §§ 19 및 27, 현재 46 U.S.C. §§ 12101, 12120, 12132, 42101-42109, 55102, 55105-55108, 55110, 55115-55117, 55119로 편찬됨.  
 존스법 면제 법규, 64 Stat 1120, 46 U.S.C. App., 제1조 선행주석  
 1916년 해운법, 46 U.S.C. §§ 50501, 56101, 57109  
 1936년 상선법, 46 U.S.C. App. §§ 1151 이하, 1171 이하, 그리고 46 U.S.C. §§ 50111, 53301-53312, 53701-53717, 53721-53725, 53731-53735, 55304, 55305, 57101, 57104,

---

에 대하여 그러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1988년 외국해운관행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대응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해사위원회에게 이용가능한 대응조치에는 운임과 서비스 계약을 취소 및/또는 정지하는 것, 항해 당 입항료를 부과하는 것, 다른 미합중국 기관이 미합중국의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을 부인하거나 통관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 그리고 연방해사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관행을 다루기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다.

57301-57308

1946년 상선매각법, 50 U.S.C. App. § 1738, 46 U.S.C. §§ 55109, 55111, 55118, 60301, 60302, 60304-60306, 60312, 80104

46 U.S.C. §§ 12101 이하 및 31301 이하

46 U.S.C. §§ 8904 및 31328(2)

여객선박법, 46 U.S.C. § 55103

42 U.S.C. §§ 9601 이하, 33 U.S.C. §§ 2701 이하 33 U.S.C. §§ 1251 이하

46 U.S.C. §§ 3301이하, 3701이하, 8103 및 12107(b)

1984년 해운법, 46 U.S.C. §§ 40701-40706, 41107-41109

1988년 외국해운관행법, 46 U.S.C. §§ 42301 이하

1920년 상선법, 46 U.S.C. §§ 50101 이하

1984년 해운법, 46 U.S.C. §§ 40101 이하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104 Pub. L. 58; 109 Stat. 557

연안 제한 및 상호성 규정, 8 U.S.C. §§ 1101 이하

선박호위규정 Section 1119 of Pub. L. 106-554 개정본

니콜슨법, 46 U.S.C. § 55114

1987년 상업용어선국적선등록방지법, 46 U.S.C. § 2101,

46 U.S.C. § 12108

43 U.S.C. § 1841

22 U.S.C. § 1980

연안수역간 해운법, 46 U.S.C. App. § 843

46 U.S.C. § 9302, 46 U.S.C. § 8502, 5대호 지역 도선운항에

관한 협정, 오타와교환공문 1978년 8월 23일 및 1979년 3월 29일, TIAS 9445

매그너슨어류보전 및 관리법 16 U.S.C. § 1801 이하

19 U.S.C. § 1466

1972년 북태평양소하성어족협약법 P.L 102-587, 1992년 해양법 Title VII

참치협약법, 16 U.S.C. §§ 951 이하

1988년 남태평양참치법, 16 U.S.C. §§ 973 이하

1982년 북태평양헬리버트법, 16 U.S.C. §§ 773 이하

대서양참치협약법, 16 U.S.C. §§ 971 이하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 16 U.S.C. §§ 2431 이하

1985년 태평양연어조약법, 16 U.S.C. §§ 3631 이하  
미합중국수산물법, 46 U.S.C. § 12102(c), 및 46 U.S.C. §31322(a)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 접근(제12.4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미합중국은 GATS상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0, GATS/SC/90/Suppl.1, GATS/SC/90/Suppl.2 및 GATS/SC/90/Suppl.3)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표시된 대로 수정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미합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미합중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사안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0, GATS/SC/90/Suppl.1, GATS/SC/90/Suppl.2 및 GATS/SC/90/Suppl.3)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미합중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외국법자문 서비스	<p>다음 주를 위한 새로운 약속 삽입:</p> <p>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p> <p>애리조나,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서비스 공급형태 1-2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는 "주 내 법률사무소 요구,"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추가로 주 내 법률사무소 요구(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Additionally, an in-state law office required)."</p> <p>미주리: 서비스 공급형태 1-2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는 "주 내 법률사무소와의 제휴 요구,"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추가로 주 내 법률사무소와의 제휴 요구(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Additionally, association with an in-state law office required)."</p>
회계·감사 및 부기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회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함. 다만, 화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p><del>계 회사를 반드시 법인화해야 하는 아이오와는 제외함.</del></p> <p>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로,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 . .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주 내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함.</p>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기존 기술을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으로 대체
연구개발서비스: 자연과학·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서비스 및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단, 공공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지원된 연구개발은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기술적 시험·분석 서비스. 단, 공공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지원된 서비스 또는 정부 지정 서비스는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기타 사업서비스. 단, 컨벤션서비스는 제외 (번역·통역 서비스는 삭제)	모든 "기타 사업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특급배달서비스(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기타 배달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된 새로운 약속을 삽입: "국내법 <sup>2)</sup>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상 규정된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따라 미합중국 우정청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의 경우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None, except unbound for services supplied by the U.S. Postal Service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as provided under domestic law <sup>2</sup> or the Universal Postal Union Acts)."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
고등교육서비스(비행교육 제외) <sup>3)</sup>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영화·비디오테이프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유통 프로모션 또는 광고 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sup>4)</sup> 제작 서비스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sup>4)</sup> 유통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sup>4)</sup> 제작·유통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유통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sup>4)</sup>	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이 개정 분류에 따른 약속 삽입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제작·유통 <sup>5)</sup> 에 관련된 기타 서비스	
<p>환경 서비스</p> <p>폐수 관리. 단, 인체 사용 목적의 용수 제외(폐수 서비스(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것))</p> <p>고형/위해 폐기물 관리(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것)</p> <p>폐물 처리 서비스</p> <p>위생 및 유사 서비스</p> <p>대기 및 기후 보호(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배기가스 및 다른 배출 감축 서비스)</p> <p>토양 및 수질 개선 및 정화(처리, 오염된 토양 및 수질 개선)</p> <p>소음 및 진동 저감(소음 저감 서비스)</p> <p>생물 다양성 및 조경 보호(자연 및 조경 보호 서비스)</p> <p>기타 환경 및 보조 서비스(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이 개정 분류에 따른 약속 삽입</p>
신체 웰빙 서비스 <sup>6)7)</sup>	<p>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도로 화물 운송	<p>서비스 공급형태 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분야/하위분야	시장 접근 개선사항
화물 처리 서비스, 보관 및 창고 서비스,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해상 또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1-3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section)."이라는 국내운송에 관한 새로운 약속 삽입

- 2) 미합중국 법상,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미합중국 우정청이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 필기·인쇄물, 소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접수·전송 및 배달하도록 요구한다.
- 3) 투명성 목적상, 미합중국의 개별 기관들은 입학 정책, 등록금 요율 결정,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의 내용 개발에 있어서 자율성을 유지한다. 교육·훈련 기관들은 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관할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기관은 기관을 운영하는 곳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며, 기관과 프로그램은 인증 상태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증기구가 정한 기준의 충족에 있어서 선택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을 정하는 자율성을 유지한다. 등록금 요율은 주 내 및 주 외 거주자에 따라 상이하다. 추가적으로, 입학정책은 지역적·국가적 및/또는 특별 기구에 의한 인정뿐만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용된 대로 (인종·민족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생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요구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학생 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 설립된 외국 기관은 미합중국 기관과 동일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 4) 명확성 목적을 위하여, 이 종류는 고정된 미디어를 통해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되는지에 상관 없이 극장 및 비극장 영화를 지칭한다.
-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유통서비스는 전시·방송 또는 그 밖의 전송·대여·판매 또는 그 밖의 사용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면허를 포함할 수 있다.
- 6)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이 하위분야는 특히, 체육시설, 스파, 살롱, 마사지(치료적 마사지는 제외한다.) 및 인도전승 의학에 의하여 제공되는 신체 웰빙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하위분야는 규제되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의 어떤 것도 미규제 물질의 공급을 승인하거나 이 서비스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주 당국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